

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17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6. 18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(개정)이유

2023. 10. 23. 국민권익위원회의 「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관리·운용 합리성 제고」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명시하고,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해 심의사항 및 활동내역을 규정하여 통합기금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용체계를 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 확대를 위한 적립기준 완화(안 제4조)
- 나.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·관리 의무 명시(안 제5조)
- 다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포함(안 제7조제2항제5호)
- 라. 금융기관 예치현황 및 심의내역 조항 신설(안 제7조제4항, 제7조제5항)
- 마.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(안 제11조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기금법 제4조, 제8조, 제13조, 제16조 (※ 붙임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기타
 - (1)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 - (2) 입법예고(2024. 5. 8. ~ 5. 30.)
 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3호 중 “직전 회계연도”를 “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”으로 하고, “150%”를 “110%”로 하며, “20%”를 “50%”로 한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5조(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) 군수는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되, 여유재원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·관리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 통합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.

제7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

④ 군수는 제2항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

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·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 이자액 등)
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⑤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
을 관리하여야 한다.

1.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
2.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 내용
3.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사항 등

제11조 중 “2024년”을 “2029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(생략) ② (생략) 1. ~ 2. (생략) 3. <u>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50%를 초과하는 경우, 그 초과분의 20%이상에 해당하는 금액</u> 4. (생략)	제4조(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) ①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</u> ---- ----- ----- <u>110%</u> ----- ----- <u>50%</u> ----- 4. (현행과 같음)
제5조(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) <u>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·관리하고,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.</u>	제5조(통합기금의 관리·운용) <u>군수는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되, 여유 재원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·관리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 통합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.</u>
제7조(통합기금의 운용심의) ① (생략)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	제7조(통합기금의 운용심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

사항을 심의한다. 1. ~ 4. (생략) <u><신설></u> 5. (생략) ③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제11조(존속기한)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4년</u> 12월 31일까지로 한다.	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<u>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</u> 6. (현행 제5호와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군수는 제2항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통합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(금융상품별 계좌번호·금액, 약정기간, 이자율, 예상 이자액 등)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</u> ⑤ <u>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.</u> 1. <u>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</u> 2. <u>심의위원회 주요 심의·의결 내용</u> 3. <u>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변경 사항 등</u> 제11조(존속기한)----- ---- <u>2029년</u> ----- -----.
--	---

□ 지방기금법 제4조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□ 지방기금법 제8조

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기금법 제13조

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 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 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-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 지방기금법 제16조

제16조(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·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(이하 “통합기금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.

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(이하 이 조에서 “예수금”이라 한다)
2.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
3.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

③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
2.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
3. 통합기금의 운용·관리에 필요한 경비

④ 재정안정화 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.

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다른 회계로의 전출
2. 지방채 원리금 상환

⑥ 지방자치단체가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,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